

## 1. 개정이유

제한수신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재 제한수신 기술은 특정 단체표준(TTA)만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제한수신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단체표준(TTA)에 규정된 제한수신 기본 기능만을 규정하여 자유롭게 제한수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현재 제한수신 기술은 특정 단체표준(TTA)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수신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만 규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제조업체에서 자유롭게 제한수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

- ‘변위’, ‘복호화’, ‘절체’ 용어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하여 각각 ‘변위(變位)’, ‘복호화(復號化)’,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로 변경하고, ‘복호화’ 용어의 경우 기술기준에서 맨 처음 나오는 한 곳만 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0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1호, 2021.1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변위”를 “**변위(變位)**”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절체”를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을 “(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復號化)**)”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1호부터 3호까지 각각 신설한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 통합 소프트웨어 내려 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를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TTAK.KO-08.0023/R2)”를 “(TTAK.KO-08.0023)”으로, “따른다”를 “만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 칙 <제2022-00호, 2022. 0.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생략) 1.~16. (생략) 17. "패킷 지연 편차(IP packet delay variation)"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변위로서 전송되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를 말한다.	제3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17. ----- ----- --- <u>변위(變位)</u> ----- -----.
제4조(핵심설비의 관리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발생 시 교체 및 절체를 위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용 한다. ② (삭제)	제4조(핵심설비의 관리 등) ① ----- ----- ----- ---- <u>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	제10조(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復號化) 규격)
제13조(제한수신) ① (생략) ② <u>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되거나 교환될 수 있어야 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u>	제13조(제한수신)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 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R2)” 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K.KO-08.0023) ----- 만 족 하 여 야 한 다.

<삭 제>